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소금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금제조업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28. ~ 2022. 2. 7.)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 있음(신설 1건)

4) 법제처 심사 전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항”을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금제조업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신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9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금제조업 등을 폐전·폐업하려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소금제조업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제2호 각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준이 허가최소인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허가 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법 제26조	허가			

한 경우	제1항 제2호	취소				
다.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허가 의 조건·시설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라.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 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 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허가 취소				
마.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 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 23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 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제외 한다)	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바.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제6호	허가 취소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checkmark$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허가번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염전 소재지						
	염전 면적	총면적		㎡			
		염전 면적		㎡			
		저수지 면적		㎡			
		그 밖의 면적		㎡			
	폐전일 또는 폐업일			년	월	일	
	폐전 또는 폐업 사유						
염전개발 허가증 또는 소금제조업 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소금산업 진흥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폐전, []폐업을
신고합니다.

Γ_{Γ}
 Γ_{Γ_0}
 Γ_0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열전개발 허가증 또는 소금제조업 허가증(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시·군·구

➔

검 토
시·군·구

➔

결 재
시·군·구

➔

신고사실 확인
(시·군·구
→신고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제9조(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 다)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를 염전(개발 예정지를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시행령 제8조제1항----- ----- ----- ----- ----- ----- -- 제출해야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폐전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 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전· 폐업 허가신청서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소금제조업 등에 대 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 2항에 따른 취소·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 설>	제12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 전·폐업신고) 법 제27조의2제1 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 전·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 지 제18호2서식의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제9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
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449